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80
----------	-------

발의연월일 : 2025. 8. 21.

발 의 자 : 서영교·박희승·박지원
조계원·박홍배·최혁진
김용민·박균택·이성운
장경태·민병덕·양부남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16개로 방대하고, 각 수사대상마다 IMS모빌리티 사건, 서희건설 청탁 사건 등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도 늘어나 점점 수사량이 확대됨에 따라 수사인력과 수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파견검사의 수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는 80명에서 140명 이내로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특검의

기본 수사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여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및 제9조제2항).

법률 제 호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단서 중 “40명”을 “70명”으로, “80명”을 “140명”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u>40명</u> ,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u>80명</u> 이내로 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u>70명</u> ----- ----- <u>140명</u> ----- -----.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수사기간 등) ① (생략)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u>90일</u>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120일</u>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략)	